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발의자: 이성순의원 외 7명
- 발의일자: 2021. 11. 25.
- 회부일자: 2021. 12. 3.
- 검토기간: 2021. 12. 3. ~ 12. 9.(7일간)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제정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복무선서(안 제2조)
- 다.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안 제3조 ~ 제7조)
- 라.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안 제8조 ~ 제10조)
- 마. 연가계획 및 허가(안 제12조)
- 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안 제13조)
- 사. 특별휴가(안 제14조)
- 아.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 7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 되어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으로 독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선서)에서 위임된 사항을, 안 제3조 ~ 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안 제12조 ~ 제16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의 7(특별휴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를 준수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의 복무, 당직, 겸임근무, 파견근무, 휴가,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등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